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3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도로법」 제76조 → 「도로법」 제91조 (안 제1조,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명확화(안 제3조제4항)

나. 인용법령 현행화 (안 제3조의2제2항)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다. 순화대상 용어 정비 (안 제3조제3항, 별표1)

- “구배” → “기울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부담 비용 등)
- 2)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28. ~ 7. 1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법무팀 검토의견]

관 계 법 령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지방세징수법」 등
법무팀 검토의견	이 조례공포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음.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기울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 ② 구청장은 원인이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감독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비고 : ① 보도 외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 4.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매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91조-----</p> <p>-----</p> <p>-----.</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p> <p>-----</p> <p>-----</p> <p>-----</p> <p>제91조-----</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최</p> <p>적기율기 -----</p> <p>-----</p> <p>-----</p> <p>-----</p> <p>-----</p> <p>-----.</p>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생략)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

④ -----
- . ----- 천재지변이 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
----- .

<삭 제>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원인이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

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생략)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복구비용			
	직접		
	간접		
	감독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관리업무 요율	

3.~4. (생략)

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1]

———— 기울기 ————

1. ——— 기울기 ————

2. —————, —————, —————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현행과 같음)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복구비용			
	직접		
	간접		
	감독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간접복구금액)× *요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관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순화 대성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도로과 조용철 (☎ 3153-9782)